

## 선을 긋고 선을 넘으면서, 함께 만드는 변화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성실하신 정명화 변호사 님이 먼저 법원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짚은 발제문을 작성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에 적극 공감하는 입장에서, 보수개신교계와 이 세력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 온 반차별 운동의 경험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 운동과 정치 주체들의 저항의 역사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걸 꿈수라고 생각해요. 법률혼에도 해당 안 된다, 사실혼에도 해당 안 된다, 그러나 차별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비슷한 복지제도에서) 많은 요구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sup>1)</sup>

“판결문을 보면 A(사실혼 배우자)와 B(동성결합 상대방)을 같다고 한 적이 없고, 동성혼을 인정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사회보장으로 기능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A와 B가 달리 취급돼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또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주장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동성혼이 인정되는 사회적 문이 열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됩니다만, 동성애·동성혼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판결문에 대한 비판에서 어떤 좀 비약이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들고요.

… 판결문 뒤쪽에 보면 ‘성적 지향’에서 시작해서 ‘국제적 추세’ 등 (보충 의견)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는 판사들에게) 이걸 왜 넣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걸 안 넣어도 되는데 어떤 판사님 한 분 때문에 넣게 됐다, 판결을 하는데 있어서는 (보충 의견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냥 적어놓으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굳이 넣었어야 되나, 넣지 않는 게 옳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하튼 (보충의견을 낸 판사들이)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넣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sup>2)</sup>

“민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다, 글로 써 놓으면 그럴 듯하게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꿈수다. 왜 그럴까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로 똑같이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 그러면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지영준 변호사<sup>3)</sup>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하 대법원 판결)과 이동환 목사 출교판결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이하 가처분 판결)이 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향후 대응 방향을 둘러싸고 보수개신교계와

1)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024년 7월 25일자 질의.

2) 이채익 의원실, 복음법률가회 공동주최,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 2023년 4월 24일자 토론. 위 토론회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보수개신교 단체들이 협력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3)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선교회,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과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시즌2 제 180회, 2024년 8월 9일자 강의.

사회운동 양측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의미의 ‘열린 문’으로 작동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특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원이 동성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사회적 의미에 뒤따른 보수개신교계의 위기의식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두 판결이 확인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보수개신교계에게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규정한 혼인관계 및 사실혼의 확장,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및 가족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위기’이지만, 사회운동에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추동할 기회이자 촉진제가 된다.

다수결 원칙에 기반한 대의민주주의 체계의 한계 속에서 소수자의 평등권 보장은 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헌법 제11조 제1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차별금지법이 보수개신교의 반대 속에서 장기간 유예되어 온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말 그대로 “법원의 판결은 사회적으로 투영되며 분쟁 당사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입법이 현실적으로 정착되어 제도화 되는데 기여”한다.<sup>4)</sup> 게다가 두 판결 사회적 변화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규범적 평가 역시 변화했다는 점을 주요하게 언급 하면서 모두 균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을 시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 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공인섭과 김성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며 판결이 현실에서 즉각적으로 가시적인 사회변동, 차별금지를 통한 차별시정, 사회통합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더라도, 이후 시민권운동과 정치주체들의 저항의 역사 속에서 점차적으로 판례를 형성 하면서 입법·행정부 역할을 압박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과 일정한 판례법리 형성이 다시 행위자 및 제도 경로를 제약하는 장기지속성의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sup>5)</sup> 차별 소송이 적은 수의 사건으로도 차별 관행을 바꾸는데 효과적이라는 의미만은 아니다. 결국 의제는 개별적일 수 있으나 기존의 차별적 규범을 변화시키려는 사회운동의 지속반복된 투쟁, 그래서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을 사회적으로 확인시키고 역사화하는 운동의 역량이 구체적인 변화와 진보 가능성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일부 보수개신교의 위기의식은 일견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보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보수개신교와 대중 다수와도 공유하는) 사법 영역에서의 변화 또한 사회변화의 일부라는 점을 외면 하면서 이를 ‘개별 판단’으로 치부하거나, 판결을 명시적인 문언 이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나, 판결의 취지와는 어긋난 초점(이를 테면 ‘법적 안정성’ 혹은 ‘법체계의 통일성’)에 기반해 보수적 대안을 제시 하며 차별당사자들의 투쟁과 운동의 사회적 의미를 ‘과소해석’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보수개신교가 아니더라도 평등 원칙을 실현하려는 입법 투쟁이 이상적이고 막연한 접근에 기반해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 내지 ‘혼란’을 가져온다고 우려하는 보수적 대중들의 경향은 다수의 정당성을 정치세력과의 친연성 속에서 법제도를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는 보수개신교의 입장과 쉽게 접합되기 때문이다.

반면 반차별을 기치로 한 사회운동에서 법제도는 다수의 취약한 이들의 ‘용기’를 잇는 도구인 동시에 ‘선을 긋고 넘는’<sup>6)</sup> 공간이라는 점에서 큰 관점의 차이가 있다. 이 공간의 확장이 대중적으로 조직될 때 사법적 변화와 함께 입법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들은 ‘차별의 영향’ 혹은 ‘차별의 중대함’에 대한 제도적 인정 그리고 사회변화에서 피해당사자들의 투쟁이 갖는 ‘공익’적 측면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수개신교가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사회정의 입법에 대한 대항 전략 프레임이 주로 ‘과괴’, ‘말살’, ‘조장’, ‘강요’, ‘악용’, ‘제약’ 등과 같이 소수자 및 소수자 운동의 부정성을 강조하

4) 박진영, 「한국 사회의 변화와 정치제도로서의 법원의 기능」, 『21세기정치학회보』 21(2), 2011.

5) 공인섭, 김성수, 「미국의 소수자 차별시정에 관한 판례법리의 변화와 시사점」, 『한양법학』 27(1), 2016.

6) 이는 1990년대 후반 미국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동성 결합을 축복을 했다는 이유로 고난을 겪었던 종교인들의 발언에서 가져온 것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 서술한다.

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

### 차별철폐투쟁의 사회적 경험을 어떻게 계속 쌓아갈 것인가

2000년대 후반 이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지속시키고 혐오정동을 사회적으로 조장·확산시킨 보수개신교의 흐름 속에서 두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보수개신교의 ‘반동성애’ 정치가 어떤 사회적 지형 속에서 양식화된 것인지를 토대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가 오랫동안 한국 기독교의 ‘전범’(典範) 내지 ‘전철’(前轍) 역할을 해왔다는 진단은 다수의 종교학자 및 종교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70~80년대 미국에서 복음주의 개신교의 새로운 부상과 사회참여·행동주의적 성격의 종교 보수주의가 강화되어 왔다. 그 속에서 교단들의 연합과 초대형 교회의 등장,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과의 연합이 더욱 공고해졌다. 거대한 보수우익 운동의 흐름이 교회라는 종교기관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사회운동 단체 결성으로 가시화된 것도 이 시기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정치 연합을 통해 보수화·극단화의 흐름이 강해지자 이에 대해 사회적 반발 혹은 반동으로서 1990~2000년대 무종교인 및 제도 밖 종교인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이른바 ‘기독교 국가’의 전통에서 종교적 갈등 혹은 양극화라는 지형이 만들어지고, 이는 다시 미국 개신교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세력화의 위기를 내전 이후의 전통적인 반공·반좌파에 더해 반동성애·반이주민·반무슬람·반페미니즘 가치를 결합시키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극우 정치세력과의 연합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보수개신교의 지형에서 미국과 표면적인 전략적 유사성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한국의 보수개신교가 정치·사회참여 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진보적 민주해방 및 사회개혁 신앙 운동에 대한 대응으로 탄생한 한기총의 부상과 맞물려 있고, 김대중 정부를 지나 노무현 정부 시기 다양한 뉴라이트 운동과 연합하면서 강력한 정치적 극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기보다 정치적 행동주의와 세력화를 통해 (종교적 신념의 신실성과는 무관하게) 카터-레이건-부시 부자 정권에서 공화당의 놓칠 수 없는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의 운동 전략의 판본이기도 하다.<sup>7)</sup> 한국의 보수개신교는 90년대 이후 공격적 선교와 정치화로 인한 교세 침체, 공신력 하락, 반개신교 정서의 확산 등으로 인해 내부 분열이 지속되고, 민주화 이후 연이은 진보 정권의 탄생으로 보수주의 위기 속에서 반공·반좌파 프레임을 갱신할 전략으로 ‘반동성애 정치’가 강화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종교사회학자 강인철은 주로 헌법처럼 자유 및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나 인권담론을 배척하면서 사회적 비판에 시달려 온 보수개신교가 상당한 사회적 여론의 지지를 업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의제를 무슬림, 양심적 병역거부자, 동성애자라는 세 가지 사회적 소수자로 꼽는다. ‘반동성애’는 보수개신교의 사회적 보수성을 증명하는 사례 중 하나일 뿐이지만, 이러한 한국사회의 대중적 인식 조건 속에서 보수개신교의 ‘반동성애 정치’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sup>8)</sup>

하지만 미국 사회가 보수주의를 내세운 정치화로 인해 종교성이 강화되면서도, 이와 대비되는 각종 차별금지 법제와 동성혼 법제화를 이룰 수 있었던 사회적 과정은 한국 사회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차이점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인권, 반차별, 평등 담론의 확산과 세력화가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는 것을 결정짓는 요

7) 민중신화자인 김진호는 한국 역사에서 개신교가 대중보다 정치 권력에 대한 접근성을 우선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의제를 관철시켜왔고, 이러한 존재양식을 통해 존속·발전해왔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진호, 「한국 개신교의 미국주의, 그 식민지적 무의식에 대하여」, 『역사비평』 70, 2005.

8) 강인철, 박노자, 「[한국의 '보수세력'을 진단한다 ①] 한국 종교의 보수성을 어떻게 볼까 : 개신교를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 44(1), 2016.

소다. 복음주의 개신교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던 시기는 이른바 신사회운동·신좌파운동·대항문화운동(New Social, New Left, Counter-cultural Movement)로 불리는 흐름 하에, 반인종주의 흑인민권운동, 페미니즘운동, 반전평화운동, 반제국주의운동, 환경정의운동, 풀뿌리 운동 등이 폭발한 1960년대였다.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불문하고 전사회적으로 강력한 차별철폐운동이 일어났던 일종의 혁명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기존의 전통적 가치와 삶의 양식이 총체적으로 도전받은 격변과 혼란의 시기이기도 했다. 복음주의 개신교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국가 정체성부터 일상을 지배하던 종교적 도덕가치 규범이 가장 위협을 받은 위기의 시기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바로 이러한 탈세속화와 보수주의와 대응하는 급진적 자유주의 흐름이라는 결정적 지형에 대한 이해 없이 미국 사회의 인권법제도 역사를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sup>9)</sup>

1960년대가 격변의 시기라는 점은 사법부의 판결에서 두드러졌는데, 얼 웨런(Earl Warren)이 이끄는 1960년대 연방대법원은 ‘사법 적극주의 시대’ 혹은 ‘웨런 시대’로 규정될 만큼 평등원칙을 바탕으로 소수자 권리 보호에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했다.<sup>10)</sup> 타 인종간 결혼을 금지한 버지니아주법에 대한 위헌 판결, 흑백분리교육의 위헌성을 확인한 이후의 흑백분리학교 통합 판결, 공립학교 내 기도 및 성경 읽기를 금지한 판결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로 인한 미국사회 내 개신교의 사회적 위상과 종교적 활동에 미친 영향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당연히 1970년대 이어진 성평등헌법수정안(ERA) 통과와 낙태 합법화 판결은 개신교의 반페미니즘 연합에도 영향을 미쳤고, 대표적인 여성 극우 인사였던 필리스 슐래플리를 필두로 STOP ERA 운동을 대대적으로 조직했다. 사실상 반동성애·반페미니즘 이데올로기는 ‘가족가치’를 매개로 동시에 강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sup>11)</sup>) 앞서 언급한 미국사회 내 복음주의 개신교의 정치세력화의 지형과 전략 변화는 바로 1960년대 급진적 자유주의 및 총체적인 차별철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사회를 떠올려보자. 성소수자를 비롯해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헌법의 평등원칙이나 보편적 권리담론가치에 기반해 전사회적인 대항적 말하기(Speak out)나 집단적인 차별철폐운동의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전사회적·집단적 의미는 규모의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체제 및 생활세계의 인식체계를 재구조화 하려는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와 운동의 등장, 그 영향력에 가깝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도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장애인권운동의 이동권 투쟁과 차별금지법제 추진, 2005년의 호주제 폐지 운동 정도를 겨우 손에 꼽을 수 있을 듯하다.

한국사회가 이러한 차별철폐운동과 그 영향을 사회구성원들이 동시대적으로 적게 경험했다는 사실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미가 ‘보편적 평등권 확립’ 혹은 ‘국체적 인권규범 및 차별금지 원

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이진구, 「미국의 문화전쟁과 '기독교미국'의 신화」, 『종교문화비평』 26, 2014.

1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송현정 외,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웨런의 연방대법원 판결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버리적 논증에 충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사회적 비판과 논쟁을 일으켰다. 한국의 보수개신교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법 적극주의’이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주장하는 논거 역시 이와 유사한 정치적 판단을 배경으로 한다.

11)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반페미니즘과 반동성애에 전선이 항상 동시에 구축되고 조직화되었다는 사실은 보수개신교의 동성애 혐오 정치의 뿌리에 “정상가족의 해체에 대한 위기의식과 정상가족 복원기획”이 놓여 있다는 이숙진의 분석을 다시 주요하게 돌아보게 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보수개신교가 동성애를 근대 핵가족·정상가족 질서를 파괴하는 타자로 등장시키면서(타자화), 정상가족의 유지와 강화에 필수적인 주체를 재생산하는(주체화) 전략을 통해 젠더 본질주의(Gender Essentialism)와 이성애 규범성(heteronormativity)에 근거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고 본 것이다. 2020년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척결 과제로 내세운 ‘바른여성인권연합’의 출범과 정치활동은 가족을 파괴하는 주체로 여성가족부를 지목하며 폐지 운동으로, ‘다시 가정으로’나 ‘한 자녀 더 갖기’ 캠페인은 타자화와 주체화 전략의 대표적인 예다. 이숙진, 「한국 개신교의 정상가족 만들기 - 타자화와 주체화 전략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82(1), 2022.

칙의 국내적 실행'으로서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의 사회적 의미가 제대로 공유되거나 체화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소수자 개인 혹은 집단은 자신들이 겪은 차별을 사회적·구조적 차별이나 불평등, 부정의로 해석하고 규명할 수 있는 언어와 경험을 갖기 어렵고, 용기 내어 말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세계로부터 공감·지지를 얻기보다는 차별임을 부정당하거나 비난받는 상황에 처하기 쉽고, 다른 사회구성원 및 사회집단, 정부 및 국가 기관 역시 차별을 가시화하려는 노력을 '촉진'하려는 시도와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조건을 구조화한다.

게다가 제도 및 정당정치 권력의 방향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적지 않다. 한 예로 미국을 중심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진보적 사법 판결이 이어지자 보수개신교계에서 이에 대한 한국의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sup>12)</sup> 가장 첫 번째는 기독교적 교리를 강조하기보다 법적인 입장을 중요시하면서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을 공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삭제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는 현재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할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인지된 현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 개신교와 유사한 전략이라고 해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보수우파와의 대립구도 속에서 자유주의 정치 세력이 반동성애·반페미니즘 기조에 대해 입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러한 과정의 사회개혁 효과에 대한 평가는 뒤로 하고) 이를 또다시 자신의 강력한 정치이데올로기적 프레임과 전선으로 삼아왔던 지형과는 전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이후의 진보개혁 정치세력임을 자임하면서도 거대 양당구도 하에서 '평등원칙'을 두고 보수와 경쟁하거나 스스로를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다. 87년 체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는 단순다수결제로 수렴되고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민주주의 공고화)을 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 평등은 소수집단에 대한 '배려'로, 평등은 민주화를 통해 미처 달성하지 못한 부산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수용여력과 경제·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접근"<sup>13)</sup>하는 것이 가능했다. 누군가의 시민권과 평등권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었던 역사 속에서 평등은 다시 '민생을 챙겨야 할 때'<sup>14)</sup>와 분리되었고, 현재에까지도 차별금지법은 '당면한 현안'에서 거부되었다. 이는 다양한 정치 주체들의 등장을 '민중'이라는 하위 범주로 동질화 하면서 계층, 학력, 성별, 지역에 따른 차이와 다양성을 포섭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민주화 '이후'의 과제로 유보"<sup>15)</sup>해 온 과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제는 너무 지겹기도 한 '나중에' 정치가 가능했던 한국사회의 역사적 토대다. 보수개신교계에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더욱 확장되는 조건이 됐다.

하지만 위의 조건과는 반대로 미국 개신교의 영향력이 강력한 한국 보수개신교계에서 미국의 역사적 '위기의 식'은 한국의 반동성애 정치 논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인 반동성애 인사 이요나

12) 미국의 사회변화에 비추어 한국 기독교계의 대응은 1) 기독교 교리보다 법적 관점에서 기독교 국회의원들을 로비하고 포섭하는 것, 2)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적 편견이 강하다는 점에 기반해 동성애자들의 비윤리성을 강조하고 기독교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 3)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보다 '사랑'을 강조하는 것, 4)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성서적 접근이 아닌 교회법적인 접근(교단법 내 동성애 반대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 운동, 미국처럼 시류에 편승한 입법이 아니라 유교전통·단일민족순결문화 등 관습법적 전통에 기반한 입법 저지 운동 등)을 강화하는 것,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과거 동성애 판결과 최근의 판결", 『뉴스와 논단』, 2020년 10월 18일자.  
 13)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차별 시정 강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위하여」,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08.  
 14) 2013년 최원식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을 챙겨야 할 지금 이런 구도(보수개신교의 왜곡된 반대 공세)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민주당, 차별금지법안 철회...보수 기독교계 공세에 '무릎'", 『한겨레』, 2013년 4월 21일자.  
 15) 김보명, 「'진보' 정치학 이후와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에 대한 소고」, 『경제와사회』 132, 2021.

목사가 포함되어 있던 보수개신교 단체들이 2015년 한 신문광고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최종 병기”<sup>16)</sup>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혼 인정을 직전에 둔 상황에서 공명하게 된 강력한 위기 의식의 발로였다. 즉 미국마저도 실패한 ‘동성애 문제’,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막아내는 것을 한국 보수개신교의 사명이자 ‘몹’이라는 인식을 내대외적으로 강화하게 된 것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 최근의 판결들의 핵심 취지, 성소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위 인정의 경험과 사회보장 권리의 확보, 성소수자에 대한 개별적인 목사 및 교회의 양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법적 정당화는 모두 ‘위기’가 소리 소문 없이 퍼지는 뒷문, 옆문으로 의미화된 이유다.

보수개신교의 극단적 정치 세력이 가진 사회적 파급력에 많은 이들이 때로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것을 안다. 나 역시 그렇다. 하지만 사회변화의 일부로서 재판부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로 그 변화가 절로 만들어지는 것 또한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한 것도 판결의 의미 중 하나다. ‘위기’를 규정하는 보수개신교 세력에 동의하지 않는 사회의 분명한 의지를 조직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반차별 운동 역시 계속되어 왔고 지속되고 있으며, 보수개신교 세력과 그 후과에 대항하는 보편적 권리쓰기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계속 연결되고 확장되어 왔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어찌 보면 판결의 제도적 한계를 짚는 것은 보다 쉽다.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법령의 대상에 ‘사실혼 배우자’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건강보험법 상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이전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 상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1976년 전부개정 당시 삭제되었다. 법령에서 배우자 외 ‘사실혼 배우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부규칙인 「자격관리 업무지침」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왔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차별처우 판단은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제도의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배우자와 함께 ‘사실혼 배우자’를 명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동성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기관의 재량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가능성 또한 크지 않다. 하지만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혼인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전제하는 현행법에 도전하는 일이며, 사실혼의 정의 또한 사회보장의 취지와 국가의 책무성이 새롭게 구성되고 그에 따라 새롭게 규범화되어야 하는 운동의 영역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성애 중심의 동반자 관계에 대한 ‘균열’ 내지 ‘틈새’를 가지고 있으며, ‘과잉해석’을 시도하는 루인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소장의 관점<sup>17)</sup>에 동의한다. 이 판결 취지를 통해 균열과 틈새를 포착하고, 다음의 운동의 과제를 설정하고, 사회적 요구를 제기하는 대중운동으로 만드는 것, 그 힘으로 정치의 틈새를 다시 넓히려는 전략이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포함한 반차별 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다.

## 차별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중대함

글로벌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Ipsos)가 매년 발표하는 리포트 <LGBT+ PRIDE>는 성소수자의 가시화와 커뮤니티 참여가 국가별로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준다. 2021년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자 친구 혹은 동료가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브라질에서 66%였지만, 한국과 일본은 7%에 머물렀다. 2023년 결과도 마찬가지였는데,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다양한 계층이 가장 비가시화 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다.

16)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상임고문 최홍준 목사)·홀리라이프(대표 이요나 목사), 「보수 개신교 단체, 또 탈동성애 축제」, 『뉴스앤조이』, 2015년 5월 8일자.

17) 루인,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문 과잉해석하기", 『고대신문』, 2024년 8월 5일자 참조.

이런 상황에서 보수개신교나 보수적 입장과 달리, 많은 이들이 대법원 판결문의 백미라고 언급했던 다수의견에 대한 김상환, 오경미 대법관의 보충 의견의 의미는 더 강조되어야 한다. 보충 의견은 편견과 차별을 참내하면서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차별 경험을 가시화하는 용기를 “실존적 결단”으로 칭했다. 이는 당연히 성소수자가 어떤 구조 속에서 차별을 드러내기 어려운지를 살피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인식이며, 차별과 낙인 속에서도 안전하고 자기 자신과 삶을 펼칠 공간을 확보하는 평등권이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본 사안의 쟁점에 대한 출발점이 “차별이 당사자에게 주는 영향을 세심하게 살펴서 알아야” 하는 일이라는 관점은 더 부각되어야 한다. 차별 경험이나 차별의 결과보다 차별행위자의 의도(보수개신교의 ‘사랑하니까 반대한다’가 대표적이다)에 무게추를 두는 사회적 경향성을 기각시키기 때문이다. “원고 주장의 무게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차별피해자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점(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보수개신교 왜곡이 대표적이다)이 아니라, 차별이라는 사회적 행위가 개인 혹은 집단에게 미치는 해악으로서의 결과에 사회가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다.

“성적 지향을 바탕으로 가정공동체를 이루며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 “공동체나 가족관계에 대하여 사회 내에서의 존재가치를 공인”받을 권리, “사회와 국가의 공인된 보호를 받을 존재가치를 부정당하”지 않을 권리가 국가의 보편적이고 중대한 사회보장 책임과 연결되는 판결 취지는 의미심장하다. (이미 짚어진 가족 내지 공동체, 배우자의 의미)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이 극단화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존중 혹은 인정’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관계 맺을 권리’에 대한 지지이자, ‘동등하게 관계 맺을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을 지원받을 권리와 연결된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의 정체성 차원에 국한되거나 고립된 권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존재와 존중을 필요로 하는 권리다. 이은진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보장될 수 있는 역량 중 하나가 바로 동등한 존중을 요구하는 ‘관계역량’임을 논증한 바 있다. 누스바움이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 10가지 핵심 역량 중 관계역량은 “사회 구성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동등하게 여기며, 서로 돌보고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기로 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sup>18)</sup>을 의미한다. 자기 존중감의 사회적 기반으로서 관계를 맺을 만한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공인이 부재한 상태가 바로 차별이며, 그 정도의 ‘중대함’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는 점이 반차별 관점에서 본 판결의 의미이기도 하다.

2심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수개신교의 대표적인 비판이 동성혼 내지 사실혼 인정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의 영역이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으로부터 이탈해 법관이 법률의 내용을 교정하는 일종의 과도한 ‘법형성’을 했다는 것에 있다.<sup>19)</sup> 하지만 보충 의견은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기본권’으로서 평등권을 수호하는 것이 법원이 하는 헌법재판의 의의와 역할임을 분명히 하면서, 사건 쟁점이 처분으로 재량권을 향사한 결과에 평등원칙 위반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또다시 분명히 했다.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보수개신교와 정치 세력의 연합이 언제나 ‘국민 다수의 의사’를 명분으로 성소수자 집단의 소수성을 강조하면서 ‘다수자 역차별’이라는 담론 구도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다.<sup>20)</sup>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는 곳이 바로 입법의 영역이었고, 평등원칙이 입법을 통해 확인되지 못해왔기 때문에 사회적 부정의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지속시켜온 입법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부정을 법원이 월권으로 교정한 것이 아니라, 사법권의 역할로서 이루어

18) 이은진,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범감정 - 역량접근의 관점에서」, 『이화젠더법학』 15(1), 2023.

19) 이는 비단 보수개신교계만의 입장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전광석,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의미와 범위 - 동성결합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학』 13(1), 2024.

20) 대표적으로 2019년 11월 21일에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명시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피해를 줄이기 위함임.”

졌다는 점은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해소와 평등원칙의 확인이 다른 장에서 계속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 변화의 가능성은 사회적 원칙을 서로 확인하는 관계 속에서

“차별금지/평등법안에는 차별에 관해 진정하거나 소제기했다는 이유로, 혹은 차별피해자를 돕는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조항이 존재한다.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사람과 그를 돕는 사람은 사회의 다양한 차별을 발견하여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공익 신고자다.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나 조력자가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그에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야 한다.” - 차별금지법 제정의 원칙과 방향(2021) 중

한국사회는 공적 신뢰도가 낮고 사적 신뢰가 높은 ‘연줄사회’라는 점을 부정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다. 그래서 차별을 당한 피해자도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사적인 사적 관계망 활용에 가장 많이 의지한다.<sup>21)</sup> 이러한 조건은 차별을 경험했을 때 개인 혹은 집단으로서의 사회구성원들은 평등이라는 사회적 원칙 속에서 국가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별금지법이 ‘혼자 남겨두지 않는 법’으로서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조건이기도 했다. 물론 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국가가 그 역할을 자임하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남겨두지 않는 법’의 실현을 차별철폐운동에서부터 시작해나가야 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무엇보다 만연한 차별과 혐오,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이 변화를 꿈꿀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판결의 큰 의의”<sup>22)</sup>라는 점에 깊게 공감하면서, 그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운동이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가 가장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처분 판결은<sup>23)</sup> 그 자체보다도 변화의 책임을 ‘차별피해자’만의 몫이나 교회만의 몫이 아니라,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의 권리를 넘어 보편적 권리를 재구성하려는 이들이 곁에 서는 과정임을 보여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동환 목사와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다.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인한 반복되는 재판의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며 나 또한 새로운 운동과 투쟁의 역사를 알게 되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이하 UMC)에서 40년 전에 제정되었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법안이 삭제되었다는 소식에 이동환 목사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글을 보고서야 비로서 찾아보게 된 교회 내부의 긴 투쟁이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사회변화와 함께 호흡했던 종교의 현재를 함께 짚어보는 것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1972년 UMC 총회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조항들이 추가되고, 1996년에는 성직자가 교회에서 동성 결합 축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1997년 미국 내브래스카주에서 레즈비언 커플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고

21) 차별을 경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빈도는 친구 등 지인(71.2%)과 가족(42.3%)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국가 기관(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및 검찰, 청와대 등)은 이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0.

22) 박한희, 김지림,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지위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4년 7월 29일자.

23)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포기하면 제 안의 무언가가 망가질 것 같았다”는 이동환 목사의 투쟁은 판결문이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성소수자의 존재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관계 속에서 종교인으로서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또한 평등의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과 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인터뷰] 모범생 목사는 이렇게 확신범이 됐다 - 이동환 목사”, 『참여연대』, 2023년 11월 28일자.



발당했던 UMC 소속 지미 크리치(Jimmy Creech) 목사는 1998년 또 다른 게이 커플의 결합 의식에서 축복했다는 이유로 다시 재판을 받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복된 여러 건의 재판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 결과가 1999년 목사직 박탈로 이어졌다는 결과가 낫설게만 느껴지지 않기도 했다.

재판 과정 중인 1998년 UMC는 동성 커플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지침이 아니라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또 다른 목사인 그레고리 델(Gregory Dell)은 교회의 판결 직후인 한 달 만에 동성 결혼 의식을 주재했고, 1년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만약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목사가 될 수 없다면... 여러분은 나를 목사로 원하지 않을 겁니다.” 동성 결혼 의식 주재 이유는 간명했고, 이 또한 낫설지 않았다.

그리고 1999년, 캘리포니아에서 1,200명의 하객 앞에서 95명의 목사들이 공동 집례자로서 나서 15년간 동반자였던 레즈비언 커플의 ‘성스러운 결합’을 축복했다. 이는 명백하게 동성커플에 대한 축복을 금지한 교회에 대한 불복종이었다. 68명이 넘는 목사들에 대한 고발이 검토되었고, 교회가 이들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변화의 향한 결정적 ‘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지미 크리치 목사는 “교회가 변화하려면 교회에서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필요하며, 어느 순간 선을 그어(to draw the line at some point) '나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데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sup>24)</sup> 그리고 자신의 성적 지향이 알려지면서 목사 안수 계획을 포기했던 랜디 밀러는 역사적인 95명의 축복 의식이 있었던 순간에 함께 하며 “우리는 선을 넘었다”(We’ve crossed a line,)고 말했다.

“감리회 목사로의 복직투쟁은 저에게는 목사직을 다시 되찾는 것 이상의 상징적 싸움입니다. 복직이 되려면 그 전에 감리회는 성소수자를 긍정하고 환대하는 교단으로 변해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성소수자 차별법 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겨서 감리회로 들어간들 또다시 출교당하겠지요. 그러니 제 진정한 복직은 한국교회가 바뀌는 날에나 가능할 겁니다. 어찌면 제가 살아있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일일지도 모르지요. 그럼에도 저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축복하고 활동을 하고 사업을 만들고 교회를 찾아가 설득합니다. 오늘의 운동이 있어야 훗날의 열매가 있기에 비록 그 열매를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도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2015년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인정되는 사회변화 흐름 속에서, 10여 년 뒤인 2024년 UMC 총회에서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목사 후보자의 안수 금지 조항이 40년 만에 삭제되었고, 교회가 동성 결혼을 개최하거나 목사가 주례 혹은 축복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되었다. 이 모든 변화가 선을 긋고(사회적 원칙을 만들고), 선을 넘는(사회적 규범과 권리를 재구성하는) 끊임없는 반복들로 이루어졌고, 혼자가 아니라 사회적 원칙을 서로 확인하는 관계와 운동 속에서 이루어졌다.

가처분 판결의 결과도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믿는다. 반차별 운동의 역할은 큰 차별에 맞서는 사회적 경험을 만들고 사회변화를 추동하고, 그 흐름과 호흡하며 교회의 변화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 긋기-만들기의 투쟁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24) Whosoever, Drawing the Line: Rev. Jimmy Creech’s Fight for Justice, Mar 01, 1999